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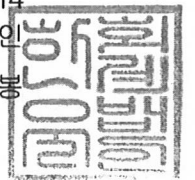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성균관대학교 교비회계의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그리고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의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성균관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기본금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 남기봉



2018년 4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 의 확인사항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제표 의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7학년도	학교법인명	성균관대학	학교명	성균관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	-	-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	-	-	-	
3. 재산 취득 시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	-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	-	-	
5. 이월금 구분(사고, 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	-	-	-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별지 제2호 서식]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7학년도	학교법인명	성균관대학	학교명	성균관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법령	위반 금액 (단위: 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	-	
3. 재산 취득 시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	
5. 이월금 구분(사고, 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0)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